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40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이동호의원 대표발의(14명 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이동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강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위생업소 지원사업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의 제한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안 제16조)
 - 준용 (안 제17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 서울시 내 강남구 식품위생업소 현황

(단위: 개소, 2023. 7월 기준)

구분	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서울시	250,036	178,410	1,528	16,049	5,911	33,313	720	14,105
강남구	25,503	17,801	100	1,042	1,275	4,336	125	824
비율(%)	10.4	9.98	6.5	6.5	21.6	13.0	17.4	5.8

○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5.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4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5.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13.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2023. 10. 5. ~ 10. 9.(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서울의 10%를 넘게 차지하는 강남구 25,503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식품위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지역인 강남구가 모범적 위생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위생업소의 표준적 위상을 제시하게 하고,
 - 이 발전적 위생업소 지원으로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생업 서비스 및 관광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입법정책적 의도를 담아 방침적 자치법규를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심히 센터설치 및 운영에 맞춰지게 되어 제명마저 수정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보다는 조례안 제안 이유인 “강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데, 안 제9항을 보면, 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해당 운용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였음.
- 다만, 안 제8조를 굳이 9개 항으로 구성할 필요없이 안 제8항과 안 제9항만 기술하면 될 것인데, 9개 항으로 구성한 것은 입법 기술상 비효율일 것이며, 본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위촉위원들이 모두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항(제2호와 제3호)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위생업소와 위생단체의 지원 범위와 모순되고 있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 센터의 명칭을 안 제2조(정의)에서도 “식품”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전체 위생업소 지원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에 식품을 삭제한 “강남구 위생업통합지원센터”가 조례안 취지와 모순되지 않을 것임.
- 그러므로, 안 제12조 중의 “식품위생”도 “위생업”으로 하고, 안 제15조(지도 및 감독)은 안 제9조(지도·감독)과 중복되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6조(예산의 지원) 중 식품진흥기금으로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럴 경우 식품위생업이 아닌 전체 위생업 지원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운영하는 법정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우려가 있어 일반 회계 예산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40호

제안일자 : 2023.10.13.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루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의 명확화(안 제1조, 안 제8조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루는 일반적인 사항 삭제(안 제8조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를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식품위생업”을 각각 “위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9항) 중 “기능은”을 “기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식품위생”을 “위생업”으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지도 및 감독)”을 “(수탁기관 지도·감독)”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을 “예산 및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식품위생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p> <p>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p> <p>4. (생략)</p> <p>④ · 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p>	<p>제1조(목적) -----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 ----- ----- -----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p> <p>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위생업----- -----</p> <p>3. 위생업----- -----</p> <p>4.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삭제></p>

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생략)

⑨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② (생략)

제1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⑥ (현행 제8항과 같음)

⑦ ----- 기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
-----.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
----- 위생업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기관 지도·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지원) -----

----- 예산 및 강남
구 식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위생업소에 음식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 환기시설 청소, 해충 구제 및 소독 등 환경개선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5. 일회용품 및 식품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위생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소 또는 단체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가. 영업정지
 -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위생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기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업소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생업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강남구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생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및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